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후719 등록무효(디)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산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우권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1. 12. 23. 선고 2011허963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가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경우 송달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은 2011. 12. 28. 원심판결 정본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 송달 대상자인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등재된 원심판결 정본을 확인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2012. 2. 8.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1. 12. 28.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됨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 도과 후인 2012. 2. 8.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보영